[양식 제16호]

후 견 개 시 신 고 서

위

인)

너

www.klac.or. ※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독은 해당번호에 "○"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 에 대한법률구조공단

,	년	펄	일)		,, 0	''	<u> </u>	' ' '	, , , , , , , ,
	성 명	한글		한자			주민등록번	호	-
1	등록기준지						출생연월약	일	
	주 소							·	
피	성 명	한글		한자			주민등록번	호	_
후	등록기준지	:]					출생연월약	길	
견	주 소							·	
인	성 명	한글		한자			주민등록번	호	-
	등록기준지	:]					출생연월약	일	
	주 소								
2 후신고 인 인 ·	성 명	한글	<u> </u>						
		한자					번 호		
	등록기준지						출생연월약	일	
	주 소						전 화	'	
							이메일		
③후견개시일자 및 원인			년	<u>.</u>	월 일	Ī			
④취임일자 및 원인			년	<u> </u>	월 일]	[]지정 [2	U법정	③선정
⑤심	판 일	자	년	<u> </u>	월 일]	법원명		
⑥フ]	타 사	항					-		
⑦제출인 성명					주	·민등록번호		_	

밨 작 성 법
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번호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①란: 2명 이상의 피후견인에 대해 후견개시가 있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적으시면 됩니다.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
-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 ③란: 후견개시일자 및 원인은 2009. 2. 1. 성년후견개시심판확정, 2010. 2. 1. 한정후견개시심 판확정 등으로 기재합니다.
- ④란:지정·법정후견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개시원인이 발생한 날(친권자의 사망, 상실등)을 기 재합니다.
 - : 선정후견인의 취임연월일은 후견인선임심판일을 기재합니다.
- ⑤란:심판일자란은 선정후견인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.
- ⑥란: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⑦란: 제출자(신고인 여부 불문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부 첨 서 류

- 1. 유언서,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부(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).
- 2. 재판서 등본 1부(가정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정한 경우).
- ※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 니다.
- 3.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.
- 4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]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 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